

공공폐수처리시설 시행자명

수신자

(경유)

제 목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

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[]조정 부과, []환급, []미수용 함을 알려드립니다.

통지내용		[] 조정 부과		[] 환 급		[] 미수용
계	납 부 통 지 금 액	미 수 납부통지금액	[]조정 부과금 []환급금	[]조정부과 []환 급 결정일자	[]수 급 []환 급 은행 및 계좌번호	기 타
사 유 ([] 조정 부과 [] 환급 [] 미수용):						
납부통지서 일련번호:						

이 통지서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-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이 미수용된 경우에는 원처분(原處分: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)을 대상으로 하고,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.
-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(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)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(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).
-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(「행정소송법」 제9조). 끝.

발 신 명 의 직인

기안자(직위/직급) 서명 / 검토자(직위/직급) 서명 / 결재자(직위/직급) 서명

협조자(직위/직급) 서명

시행 처리과 - 일련번호 (시행일자)

접수 처리과명 - 일련번호 (접수일자)

우 주소

/홈페이지 주소

전화()

전송()

/전자우편주소

/공개구분